

## □ 추진목적

- 생애초기 유아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
- 지역 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12월
- 지원규모 : 1개 시설 당 90,000천 원
- 지원자격 : 부산지역 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기반 시설
- 교육대상 : 부산지역 영·유아 교육기관의 만3세~5세 유아 및 유아교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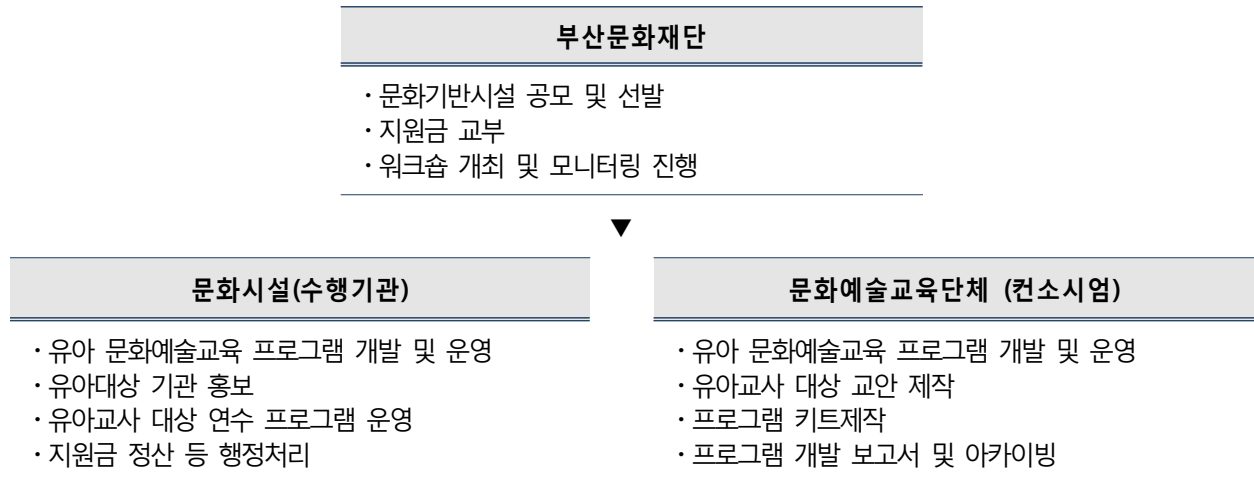
## &lt;참고사항&gt; 프로그램 운영 주체 선정 대상

<b>자격요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국 문화시설(해당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적·물적 기반을 가진 시설)</li> <li>※ 유아의 수업 참여를 위한 안전한 공간 확보 또는 안전 공간 마련 계획 필수</li> </ul>
<b>우대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 담당자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</li> <li>■ 아래 정의에 해당하는 문화기반시설</li> </ul>

## [※ 문화기반시설]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 20조에 해당하는 문화시설

-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·공립 공연장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·공립 박물관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·공립 미술관
-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
-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
-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

## □ 운영체계 및 역할



## 2 공모개요

- 공모명: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시설 공모
- 공모기간: 2019. 3. 21. ~ 4. 12. (금) 18:00
- 신청방법: 공모기간 내 신청서 작성 및 공문 제출
- 신청자격: 부산지역 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기반 시설
- 제출서류: 공모신청서 (별도양식), 사업자등록증, 컨소시엄 협약서
- 지원규모: 총 2개시설 / 1개소 90,000천 원
- 운영기간: 2019. 4. ~ 12.

### 3

## 세부 공모내용

### □ 교육프로그램 개발

#### ○ 프로그램 개발진 (연구진 및 강사진) 구성

-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 컨소시엄 구성 (※ 협약서 제출)

구분	자격요건	주요 역할	비고	
연구진	문화예술전문가	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경력 5년 이상	- 유아 대상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	컨소시엄 단체
	강사진	연간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	- 유아 대상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	
	유아교육전문가	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경력 5년 이상	- 유아의 발달단계 및 유아의 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환경에 관한 검토 - 기존 유아교육과의 차별성 검토	외부전문인력
	시설전문가	문화기반시설 내부 인력	- 문화기반시설의 고유한 장르 및 시설 특성에 대한 검토 진행	시설전문가

#### ○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키트 개발

구분	구성 내용
프로그램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명 내외의 아동 총 4차시 (※ 1회차=40분×2시수 이상) 프로그램</li> <li>- 방문형·체험형 혼합 구성 (예시: 1회~3회 방문형 / 4회: 체험형)</li> <li>* 방문형 : 프로그램 강사진이 유아기관 방문 / 체험형 : 유아가 문화시설에서 체험</li> <li>- 전체 프로그램은 하나의 주제로 각 회차가 연계성 있게 구성</li> <li>- 반복학습을 통한 단순 기능교육 지양</li> <li>- 문화기반시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</li> <li>- 유아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차별화된 예술교육을 포함</li> <li>-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누리과정 연계</li> </ul>
키트개발 및 활동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모성 재료의 키트 지양</li> <li>- 기존 프로그램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재료 및 도구를 다각도로 활용</li> <li>- 방문형·체험형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활동지 개발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참여자 (만 3세~5세 유아)의 발달단계 등을 충분히 고려</li> <li>- 유아교육을 위한 안전한 공간 확보 및 안전계획 마련 필요</li> </ul>

## □ 영·유아 교육기관 모집 및 관리

### ○ 운영 기준

- 영·유아 활동 기관 수: 총 25개 기관 (※ 1개소 × 25개 기관)
- 프로그램 참여자: 총 500명 (※ 1개 영·유아시설 × 20명 × 25개 기관)

### ○ 홍보계획

구 분	구 성 내 용	비 고
설명회 개최	- 부산광역시교육청 간담회 개최 시 프로그램 설명 협조 (재단 요청시) - 문화시설 관내 영유아 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(필수)	
홍보물 제작	- 포스터 및 리플렛 디자인 일원화 및 기관별 인쇄 - 시설 내 비치 및 배포 등	
온라인 홍보	- 재단 내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및 홈페이지 개재 - 문화시설 홈페이지 연동 및 사업 안내	

## □ 유아교사 연수 운영

### ○ 교수법 개발

- 기존의 영·유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교수법 개발
- 유아대상으로 개발한 콘텐츠를 유아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구성
- 교사지도안 제작

### ○ 운영기준

- 방학시기 활용
- 총 15시수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 구성 (※ 3차시 × 5시수)
- 유아교사 총 75명 내외 연수 운영 (※ 15명 내외 × 5회)

## 4 심의절차 및 기준

### □ 심의절차

- 1차: 서류심의
- 2차: PT심의 (※ 컨소시엄 단체 대표 및 연구원 참석 가능)
- 심의 기준

심사영역	세부영역	심사지표	배점
1차 (서류심의)	이해도	-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이해도 - 사업 수행의 추진체계	30
	전문성	- 유사사업 실적 - 프로그램 개발진의 역량 및 전문성	35
	실현성	- 프로그램의 보급·확산 의지 - 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의 실현성	35
<b>합계</b>			<b>100</b>
2차 (PT심의)	콘텐츠의 구체성	- 새로운 예술교육 및 미적체험 프로그램 개발 의지 - 유아의 발달 단계 고려 여부	20
	내용의 차별성	- 교육 대상자의 특성 반영에 대한 적절성 - 기존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- 해당 시설의 고유한 예술장르 반영 여부	30
	운영자원	- 유아 교육환경의 적절성 - 교구 및 시설의 안정성	40
<b>합계</b>			<b>100</b>

### □ 선정 고려사항

-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본 방향에 부합하고,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
-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및 안전공간 확보 필수
- 행사 중심의 1회성 사업 및 반복학습을 통한 단순 기능교육 지양
- 인력파견 중심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사업 기획
-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유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프로그램 개발진 전문성 확보 필수
- 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영 지원 및 협력이 가능한 문화시설

# 5

## 예산편성 기준

단위: 천 원

목	세	세세목	내 용	집행 방법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강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강사 : 시간당 43,000원 / 보조강사 : 시간당 22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강사비는 교육 회차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</li> <li>※ 캠프,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5시간까지 책정 가능</li> <li>- 강사비 중복 지급 불가</li> <li>- 지급내역서(인적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, 교육/강연 일자·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</li> </ul> </li> <li>○ 모든 인건비 및 사례비 중복 지급 불가하며 원천세(사업소득 or 기타소득, 근로소득X) 납부 및 납부영수증 증빙 필수</li> </ul>	계좌 이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전문가 활용비 (연구 개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프로그램 개발(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, 유아교사 연수) 연구진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자 격</th> <th>역 할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책임연구원</td> <td>부교수 수준</td> <td>1인을 원칙으로 하되,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</td> <td>월 3,216,863</td> </tr> <tr> <td>연구원</td> <td>대학 조교수 수준</td> <td>책임연구원 보조</td> <td>월 2,466,647</td> </tr> <tr> <td>연구보조원</td> <td>대학 조교 수준</td> <td>통계처리, 번역 등</td> <td>월 1,648,871</td> </tr> <tr> <td>보 조 원</td> <td></td> <td>타자, 계산, 원고정리 등</td> <td>월 1,236,69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li>○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따른 2019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 증감 가능</li> <li>※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강사비, 초빙강사료, 원고료 등 지급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	구 분	자 격	역 할	지급금액	책임연구원	부교수 수준	1인을 원칙으로 하되,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	월 3,216,863	연구원	대학 조교수 수준	책임연구원 보조	월 2,466,647	연구보조원	대학 조교 수준	통계처리, 번역 등	월 1,648,871	보 조 원		타자, 계산, 원고정리 등	월 1,236,695	계좌 이체																	
	구 분	자 격	역 할	지급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책임연구원	부교수 수준	1인을 원칙으로 하되,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	월 3,216,86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원	대학 조교수 수준	책임연구원 보조	월 2,466,64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보조원	대학 조교 수준	통계처리, 번역 등	월 1,648,87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 조 원		타자, 계산, 원고정리 등	월 1,236,69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제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</li> <li>※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 필수 첨부</li> <li>※ 기념품 제작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	카드 집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 수용비 (01)	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자재 및 약기 등 비소모성 물품은 자산취득으로 간주 될 수 있는 물품은 구입불가하며, 반드시 대여하여 진행하여야 함.</li> </ul> </li> <li>○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,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</li> <li>※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 필수 제출.</li> <li>※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 금지</li> <li>※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금지</li> <li>-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.</li> </ul> </li> </ul>	카드 집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회계 검사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 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(수수료)로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기준금액</th> <th>수수료</th> <th>기준 금액</th> <th>수수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~4천만원 미만</td> <td>336,000</td> <td>2억원 이상~3억원 미만</td> <td>894,000</td> </tr> <tr> <td>4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</td> <td>365,000</td> <td>3억원 이상~4억원 미만</td> <td>940,000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이상~6천만원 미만</td> <td>505,000</td> <td>4억원 이상~5억원 미만</td> <td>985,000</td> </tr> <tr> <td>6천만원 이상~7천만원 미만</td> <td>547,000</td> <td>5억원 이상~6억원 미만</td> <td>1,147,000</td> </tr> <tr> <td>7천만원 이상~8천만원 미만</td> <td>590,000</td> <td>6억원 이상~7억원 미만</td> <td>1,189,000</td> </tr> <tr> <td>8천만원 이상~9천만원 미만</td> <td>632,000</td> <td>7억원 이상~8억원 미만</td> <td>1,231,000</td> </tr> <tr> <td>9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</td> <td>674,000</td> <td>8억원 이상~9억원 미만</td> <td>1,274,000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이상~2억원 미만</td> <td>848,000</td> <td>9억원 이상~10억원 미만</td> <td>1,315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/ul>	기준금액	수수료	기준 금액	수수료	~4천만원 미만	336,000	2억원 이상~3억원 미만	894,000	4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	365,000	3억원 이상~4억원 미만	940,000	5천만원 이상~6천만원 미만	505,000	4억원 이상~5억원 미만	985,000	6천만원 이상~7천만원 미만	547,000	5억원 이상~6억원 미만	1,147,000	7천만원 이상~8천만원 미만	590,000	6억원 이상~7억원 미만	1,189,000	8천만원 이상~9천만원 미만	632,000	7억원 이상~8억원 미만	1,231,000	9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	674,000	8억원 이상~9억원 미만	1,274,000	1억원 이상~2억원 미만	848,000	9억원 이상~10억원 미만	1,315,000	카드 집행, 계좌 이체	
기준금액	수수료	기준 금액	수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~4천만원 미만	336,000	2억원 이상~3억원 미만	89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	365,000	3억원 이상~4억원 미만	94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상~6천만원 미만	505,000	4억원 이상~5억원 미만	98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천만원 이상~7천만원 미만	547,000	5억원 이상~6억원 미만	1,147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천만원 이상~8천만원 미만	590,000	6억원 이상~7억원 미만	1,189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천만원 이상~9천만원 미만	632,000	7억원 이상~8억원 미만	1,23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	674,000	8억원 이상~9억원 미만	1,27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원 이상~2억원 미만	848,000	9억원 이상~10억원 미만	1,31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목	세	세세목	내 용	집행 방법	비고
	공공요 금 및 제세 (02)	공공 요금	○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등 - 교육공간 및 교육참여자 대상 보험가입 필수이며, 교육장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 우 재단과 상의하여 결정 (야외활동의 경우 보험가입 필수) ○ 소득세 종업원분	카드 집행, 계좌 이체	
	임차비 (07)	기자재	○ 기자재 임차 : 비소모성 물품은 구입이 아닌 대여 권장 ※ 비소모성 물품 구입 시, 재단과 사전협의 하에 진행	카드 집행	
	일반 용역료 (14)	외주 업체 용역비	○ 행사 대행업체 용역, 디자인 용역, 영상물 제작 용역(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), 홍보(프로모션) 대행업체 용역, 구매(제작용역) 등 ※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 필수 제출.	카드 집행, 계좌 이체	
	복리 후생비 (12)	4대보험 기관 부담금	○ 의료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	계좌 이체	
업무 활동비 (240)	사업 추진비 (01)	회의 식비	○ <b>회의식비 기준단가 : 15,000원 / 1인 1식 기준</b> ※ 단가 기준은 식대와 다과비를 포함한 금액임. ※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. ※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(회의식비가 사업비의 10% 이상 일 경우, 재단 담당자가 상세 산출 내역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내역 불충분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)	카드 집행	
인건비 (110)	상용 임금 (03)	행정전 담인력	○ <b>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전담인력에 관한 인건비</b> - 채용기간, 근로조건 등은 사업 운영기간 내 운영기관 내규에 준하여 책정 ※ 전체 사업비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인원 및 역 할분담 고려 필요	계좌 이체	
	일용 임금 (04)	보조 인력	○ <b>최대 1일 8시간, 66,800원 적용</b> -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,350원 적용 - 연간 30일 이내 활용 - 보조인력의 고용·산재보험은 각 단체의 보험요율에 맞게 책정	계좌 이체	